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2746
----------	------

제출일자 : 20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구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6. 1. ~ 자금 소진 시
- 출연금액 : 10억 원(출연 시 보증 규모 120억 원)
- 내 용
 -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 지속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나. 그간 추진경과

- 보증규모 : 120억 원(신용보증재단 전액보증)
- 접수기간
 - (1차) 2025. 1. 1. ~
 - (2차) 2025. 4. 15. ~ 접수진행 중

○ 보증내역

(9. 30. 기준)

대 상	보 증 실 행			비 고
	보증규모	건 수	금 액	
	합 계	546건	11,970백만 원	
고 신 용 (1~2등급)	60억 원	238건	5,980백만 원	
중 신 용 (3~7등급)	58억 원	288건	5,800백만 원	
저 신 용 (6~9등급)	2억 원	20건	190백만 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5. 12.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5. 12.
- 사업시행 : 2026. 1. ~ 자금 소진 시

3. 출연심의 요구서 : 따로 붙임

4. 출연기관 현황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제7조(기본재산), 제9조(설립)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관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 표 : 황 병 옥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출 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1,000백만 원(균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사업기간</th> <th style="width: 15%;">예산액</th> <th style="width: 15%;">2026 요구액</th> <th style="width: 15%;">2025 요구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재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1월 ~ 자금소진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body> </table> <p>※ 출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원으로 조성</p>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2026 요구액	2025 요구액	합 계	-	1,000	1,000	1,000	기본재산	1월 ~ 자금소진시	1,000	1,000	1,000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2026 요구액	2025 요구액												
합 계	-	1,000	1,000	1,000												
기본재산	1월 ~ 자금소진시	1,000	1,000	1,000												
출 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유통 지원 필요 															
근 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00백만 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대구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 053-560-6300							
			홈페이지 : www.ttg.co.kr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시 행 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조 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자	○ 설립일자 : 1996. 11. 7.									
조직인력	○ 2본부 1실 2부 3센터 8영업점 / 정원 112명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 중소기업·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 구상권의 행사 ○ 기본재산 관리 ○ 국가,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보증현황 (건, 백만원)	총보증공급 (누적, '25.9.30.)		보증잔액 ('25.9.30.)		2025년 보증공급 ('25.9.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25,749	19,343,307	132,049	3,271,927	70,218	2,336,411				
기본재산 (백만원)	총 기본재산 ('25.9.30)	설립당시 기본재산				증감 기본재산				자치단체 출연 기본재산 (기초포함)
		소계	시	정부	기타	소계	시	구군 청	정부	
	590,111	51,427	25,000	10,500	15,927	538,684	174,544	11,680	76,173	276,287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24.12.31.)			부채('24.12.31.)			자본('24.12.31.)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 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90,706	249,047	141,659	93,336	39,392	53,944	297,370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전문개정 2011. 4. 14.]
-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보증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